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60 발의연월일: 2021. 7. 27.

발 의 자 : 양정숙 · 강민정 · 김성주

김홍걸 · 서영교 · 심상정

윤준병 • 이상헌 • 이용빈

조오섭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온라인 매매사이트에 게재된 거짓·과장 광고에 속아 자동차 매매단지를 방문한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(중고차딜러)의 협박, 위력 행사 등에 의해 구매할 의사가 없었던 자동차를 강매당하는 등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이러한 피해사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중고자동차 표시·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 거짓·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하려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·과장광고의 유 형을 세분화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상의 허위·과장광고를 점 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 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69조의4 신설 등).

#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·광고를 하는 행위
  - 가.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 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·광고
  - 나.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거짓·과장하는 표시·광고
  - 다.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·광고
- ④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·광고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중 "거짓이나 과장된"을 "부당한"으로 한다.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9조의4(자동차 인터넷 표시·광고의 점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 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·광고가 제57조제3

항제2호 및 제5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야 한다. 다만,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58조제3항의 위반이 의심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할 수 있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·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실시 주기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80조제5호의3 중 "거짓이나 과장된"을 "부당한"으로 한다. 제84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6.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	제57조(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
금지 행위) ①・② (생 략)	금지 행위) ①・② (현행과 같
	승)
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	3
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	2.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
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	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
<u>나</u> 과장된 표시·광고를 하	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는 행위	부당한 표시·광고를 하는
	<u>행위</u>
	가.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
	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
	<u>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</u>
	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
	표시 • 광고
	나.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
	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
	<u>가격 등 내용을 거짓·과</u>
	<u>장하는 표시·광고</u>
	다.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의
	<u>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</u>

#### <신 설>

제66조(사업의 취소·정지) ① 시 전 장·군수·구청장은 자동차관 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~ 11. (생략)
- 12.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• 나. (생략)

다.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 하여 <u>거짓이나 과장된</u> 표 시·광고를 한 경우 라. ~ 아. (생 략)

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
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
<u>광고</u>
④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
금지되는 표시 · 광고의 구체적
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레66조(사업의 취소·정지) ①
,
<u>.</u>
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
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다
<u>부당한</u>
라. ~ 아. (현행과 같음)

13. ~ 16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 13. ~ 1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9조의4(자동차 인터넷 표시· 광고의 점검)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·광 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5 8조제3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5 8조제3항의 위반이 의심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 검을 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

에 따라야 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·광고에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실시주기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80소(멀직)	각 호의 어느
	자는 2년 이
	2천만원 이하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

- 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5의2. (생 략)
- 5의3.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 하여 <u>거짓이나 과장된</u> 표시
  - 광고를 한 자
- 6. ~ 10. (생략)

제84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4. (생 략)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③ ~ ⑥ (생 략)

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
5의3
<u>부당한</u>
6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8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
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
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6.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
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

치를 하지 아니한 자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